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04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완도군 D 전 968㎡에 관하여 2022. 2. 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2.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전남 완도군 D 전 96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 2. 10. 접수 제1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2. 4. 6.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2. 9. 13.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67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 9. 13. ‘C은 원고에게 347,356,340원 및 그중 346,185,695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22. 2. 7. 피고와 전남 완도군 D 전 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22. 4.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어선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선을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작할 농지를 구하는 중 C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어선을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600만 원에, 이 사건 어선을 1,2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매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연체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보존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1. 12. 29.경 대출금의 납입을 지체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선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은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C과 친구 사이로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어선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묵전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어선은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분해한 상태로 정상 운항이 가능할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어선명칭 :

어선번호 :

어선의 종류 : 동력선

선 적 항 : 완도군

총 톤 수 : 1.53톤

선체재질 : FRP

기관의 종류 · 마력 및 대수 : 가솔린선외기 기관 175.000 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연월일 : 2003년 01월 20일

소 유 자 :

끝.

